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9. 15

나. 제안자 : 한병환 의원 외 31인

다. 회부일자 : 1998. 9. 1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98. 9. 17) 상정채택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2항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도세징수액의 50%를 교부하여 왔으나,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고 도의 재정통제를 강화한다는 사유로 도세징수 교부율을 최소경비 수준인 3%까지 하향 조정하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

○ 부천시 경우 도세 교부금이 일반회계의 19.4%(539억)를 차지하고 있어 개정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므로 부천시의회의원 일동은 정부의 도세교부금정수제도 개선계획의 전면 중단과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되는 대단위 공사는 도비 지원을 확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 주요골자

○ 수도권 일원의 대도시는 환경·교통·인구 과밀로 인한 도시기반 시설 수요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IMF체제후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668억)와 채납액 증가(300억)로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기이 공사중인 52개 사업 186억을 삭감한 바 있고, 향후에도 22건 128억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인면서 현재 진행중인 중장기사업 추진에 3,875억이 소요되는 절박한 실정인 바

○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고 재정통제 수단으로 이용기 위해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 판단되며, 또한 종전의 대도시가 재정자립도가 우수하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부천시의 경우 재정시는 당초 예산기준 재정자립도가 10% 이상 악화되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제안이유와 같이 도세 교부율은 현행과 같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간을 연결하는 도로 및 수질관리사업비 등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도비 및 지역개발기금을 더욱 확대하여 지원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채택키로 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문 : 후첨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

의안번호	제27호
의결년월일	98. 9. 22 (제64회)

발의년월일 : 1998. 9. 15

발 의 자 : 한병환 의원의 31인

1. 주 문

-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2항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 시의 도세징수액의 50%를 교부하여 왔으나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고 도의 재정통제를 강화한다는 사유로 도세징수교부율을 최소화비 수준인 3%까지 하향 개정하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
- 부천시의 경우 도세징수교부금이 일반회계의 19.4%(539억)를 차지하고 있어 개정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므로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도세교부금징수제도 개선계획의 전면 중단과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되는 대단위 공사는 도비 지원을 확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 제안이유

- 수도권 일원의 대도시는 환경, 교통, 인구 과밀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수요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IMF체제 후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668억)와 체납액 증가(300억)로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기이 공사중인 52개 사업 186억원을 삭감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22건 128억원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인면서 현재 추진중인 중장기사업 추진에 3,875억이 소요되는 절박한 실정인 바

-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고 재정통제 수단으로 이용키 위해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 판단되며 또한 종전의 대도시가 재정자립도가 우수하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부천시의 경우 재정시는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0% 이상 악화되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제안이유와 같이 도세교부율을 현행과 같이 반드시 유지되어 할 것이고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간을 연결하는 도로 및 수질관리사업비 등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도비 및 지역개발기금을 더욱 확대하여 지원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첨 부 : 도세징수교부금제도와 관련한 참고자료 1부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문

-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2항의 인구 50만 이상 시의 도세징수교부율 50%를 시·군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도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교부율을 최소 경비 수준인 3%까지 하향 조정하려는 정부방침과 관련하여
- 부천시의 경우 도세 교부금이 일반회계의 19.4%(539억)를 차지하고 있어 중요 세입원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 일원 대도시는 환경, 교통, 인구과밀로 인한 도시 기반시설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IMF체제후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668억)와 체납액 증가(300억)로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기이 공사중인 52개 사업 186억원을 삭감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22건 128억원을 조정해야 될뿐 더러 현재 진행중인 중장기사업 추진에 3,875억이 소요되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고 재정통제 수단으로 이용키 위해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 판단되며, 또한 종전의 대도시가 재정자립도가 우수하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부천시의 경우 법 개정시는 당초 예산기준 재정자립도가 10% 이상 악화되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부천시의회의원 일동은 도세 교부율은 현행과 같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간을 연결하는 도로 및 수질관리사업비 등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도비 및 지역개발기금을 더욱 확대하여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 천 시 의 회 의 장